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0. 31 선고 2024가단248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10. 17.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와 피고 사이에 2024. 2.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2. 14. 접수 제5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8. 이 법원에 B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 법원 2015가소21704 사건), 이 법원은 2015. 10. 8. 'B은 원고에게 15,729,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3.부터 2013. 6. 30.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8. 18.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0. 27. 확정되었다.

나. B은 2024. 2. 1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24.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경로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체결되기 전에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어떤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당시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별지